

의안번호	2203196
의 퇴 인	정준호의원
회 답 일	2024.11.7.
추계번호	24C2835
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8조의2 (자살예방장소 지정 등)	-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된 자살예방장소에 자살예방용 긴급전화 등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물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(제2항) -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(제3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8조의2 (자살예방장소 지정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살예방장소를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자살예방용 긴급전화 등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국가가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동법 제13조제4항에 근거하여 2024년 기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는 17개 시·도 중 5개 시·도에만 총 30대가 설치되어 있으며, 해당 예산총액은 1,398만원임¹⁾

1) 서울특별시의 경우 한강 교량에 자살예방용 긴급전화 74대 설치되어있으나 민간단체(SOS 희망의 전

[표1] 시·도별 자살예방용 긴급전화 설치 현황

시·도	자살예방용 긴급전화 (대)	예산액(원)
경북	20	8,440,000
부산	5	2,000,000
강원	2	300,000
인천	2	2,240,000
충남	1	1,000,000
합계	30	13,980,000

자료: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

-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자살예방장소를 지정하여 자살예방용 긴급전화기 등의 시설물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경우, 설치 대상 지역의 확대에 따른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-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자살예방장소의 지정 장소와 자살예방 시설물 설치의 종류 및 단가, 비용지원의 범위 및 수준 등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나 이에 관한 정보를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화)에서 설치비 및 운영비를 전액 부담하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무관함

Ⅲ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장우윤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우윤	02-6788-4741	jangwy93@assembly.go.kr